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기열 의원 외 31명

나. 의안번호 : 제2445호

다. 제출일자 : 2021. 5. 27.

라.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사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통·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별지 견인료납부고지서(제1호), 보관료납부고지서(제2호)에는 납부의무자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및 면허번호

호가 포함되어 있음

- 견인료와 보관료의 납부는 견인된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 소유자(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타 시·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면허번호는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함(별지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4 ~ 2021.6. 1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11.3월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는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함
- 견인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치구 주차 견인 업체('95,이관사무)는 원활한 '차량 견인·보관'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면허번호' 확인 후 차량을 주인 인도해야하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동개정안에 대해 원안 동의가 필요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본 조례의 별지에 납부의무자가 기입해야 하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변경하고 ‘면허번호’는 삭제하여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 24조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에서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5월 공공,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토록 관련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의결한 바 있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식에서 예외적으로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한 경우³⁾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면허번호는 삭제토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서식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3)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